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4
------	------

2023.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3.7.10)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의 위임²⁾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주요 내용

- 현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6대 국정목표³⁾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마련,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전 지원 등 3대 약속과 함께 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함.

1)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정치행정)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	(외교안보)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정안전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약속 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교통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약속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7.)

- 그리고 이러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⁴⁾되면서, 그동안 법령 체계상 별도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이 통합·추진될 수 있는 입법체계가 마련됨.

< 통합 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법률 연혁 >

		자 치 분 권	균 형 발 전
참 여 정 부	법령	「지방분권특별법」 (법률 제7060호, 2004.1.16.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7061호, 2004.4.1. 시행)
	내용	- 지방분권 기본 이념, 사무배분 원칙, 자율과 참여의 원칙 등 규정 - 권한과 사무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지방분권추진 위원회 구성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선정·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발투자협약 체결 등

4) 2023. 6. 9. 제정, 2023. 7. 10. 시행

이명박 정부	법령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65호, 2008.5.30.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9629호, 2009.4.22. 시행)
	내용	- 지방분권 기본 이념, 사무배분 원칙, 지방분권 추진 일정, 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등 규정 -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등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 -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의 지역 선도 산업,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등
박근혜 정부	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 2013.5.28.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12215호, 2015.1.1. 시행)
	내용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방분권 기본 이념, 사무배분 원칙 등 규정 - 지방분권 추진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특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 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특화산업,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신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등
문재인 정부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01호, 2018.3.20.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15489호, 2018.3.20. 시행)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규정 - 자치분권 기본원칙, 자치분권 추진과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자치분권위원회 설치·운영,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복원 근거 마련 - 지역혁신체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도지역 혁신협의회, 시·도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

* 출처: 송우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월간 KIET 산업경제(2023.7.) p.11의 내용을 추가·보완함

- 동 특별법은 ▶총칙(제1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제2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3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제4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5장) 등 총 5개의 장, 9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명시함.

＜ 특별법의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1장 총칙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책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범실시 등 규정
2장 종합계획	제6조~제11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등
3장 과제 추진	제12조~제61조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회발전특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시책과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건전성 강화 등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관한 사항 등
4장 지방시대위원회	제62조~제73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시대기획단 등
5장 특별회계	제74조~제9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용 등

-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원조직인 시·도 지방시대 지원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⁵⁾.

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동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5)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법령상 주요 내용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구성	제1항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구성
		제2항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관련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해당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성별 고려) - 지방시대위원장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 추천 - 대학·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추천 -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시·도 공무원 -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 관련 전문성·역량을 갖춘 사람
		제3항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
	임기	제4항	위촉 위원 임기 2년
	회의 운영	제5항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의장
	의결 방법	제6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기능 (심의 사항)	제7항	-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 -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관할 시·도 추진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시행 - 관할 시·도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정책의 운영체계평가 및 개선 -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발전 -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분과 위원회	제8항	효율적인 심의·의결 위해 필요 시 설치
	시·도 조례위임	제9항	위 사항에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처리 사무	제1항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시·도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운영 지원 사무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시·도분과위원회)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 작성 사무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관련 전문적인 조사·연구 사무 -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 사무 -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 사업자 지원 사무 - 시·도의 초광역적 협력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 사무 - 시·도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지원 및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지원 사무
	구성	제2항	-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 임명
	파견요청 전문기관 지정	제3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 공무원·임직원 파견 요청 -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위해 전문기관 지정
	경비 지원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단 활동에 필요 경비 지원
	시·도 조례위임	제5항	위 사항에 외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동 특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회의 조기 구성 요청⁶⁾에 따라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현재 까지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됨.

<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포함 17명
 - 임명직(2) :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
 - 위촉직(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 위촉직 위원 세부 구성 : 분권 6명, 지역균형 9명

구분	분권(6)			지역균형(9)					
5대 전략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정주환경	
분야 (9)	지방자치	재정분권	자치경찰	교육개혁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	도시계획	보건
위원수 (15)	4	1	1	1	3	1	1	2	1

- 임 기 : 민간위원 2년(공무원은 직위 재직기간)
 - 위촉기간 : 2023. 9. 14. ~ 2025. 9. 13.

○ 위원회 운영

- 회의운영 : 시장의 소집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위원 위촉해제, 제척·기파·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023년 제1차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

- 개최일시 : 2023. 9. 19.(화) 16:00 ~ 17:30
- 심의내용 :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23~27년)(안) 심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 85개 세부사업 참고자료

< 2023년 제2차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

- 개최일시 : 2023. 11. 21.(화) 10:00 ~ 13:00
- 심의내용 :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의결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또한 동 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도 의무 설치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실 조직 담당관(분권참여팀)과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균형발전계획팀)가 위원회 운영 및 계획 수립 등을 각각 지원함.

< 서울시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 지원단 구성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 단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 기능 : 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 단 장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단 원 : (지방분권팀) 조직담당관, 분권참여팀장, 담당직원
(균형발전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계획팀장, 담당직원

○ 지원단 운영

- 위원회 운영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안건심의 활동 지원 등
-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종합계획 세부 과제 검토, 이행실적 점검 등

라.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상기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제1조	목적	제5조	회의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2조	서울특별시 지방시대 위원회 구성 등	제6조	간사	제10조	조사·연구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분과위원회	제11조	회의록
제4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 동 조례안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며, 서울시의 운영 실정에 맞게 관련 조문 내용을 구체화함.

< 표준조례안 및 조례안의 조문 체계 >

표준조례안	조례안	표준조례안과 차이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위원 임기 및 당연직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제3조(위원장의 직무)	법령상 위원장 직무 구체화
제3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제4조(회의)	제5조(회의)	의결정족수, 대리위원 참석, 제척·기피·회피 등 회의 운영 내용 구체화
제5조(간사)	제6조(간사)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〇〇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조사·연구)	제10조(조사·연구)	
제10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제11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수당 등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름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안 제2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안 제4조는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촉 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⁷⁾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준조례안은 세 가지의 해촉 사유⁸⁾를 규정하는 것에 비해 조례안에서는 더욱 상세한 해촉 사유를 규정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안 제5조 및 안 제7조)

- 안 제5조는 회의 소집·통보, 의결정족수 등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표준조례안이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⁹⁾한 것과 달리, 동 조례안은 다수의

7)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8) 표준조례안 제3조(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표준조례안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개최할 만큼 안건이 많지 않은 실무 사정을 고려해 정기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지역혁신협의회’는 관련 시행계획 및 유공 포상 등 심의를 위해 2022년에 총 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¹⁰⁾.
- 또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고(안 제5조제4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항).
-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위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특별법 시행령¹¹⁾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지역혁신협의회는 특별법 제정 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심의기관으로, '22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1차 회의, 서면),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심사(2차회의, 서면) 등 2022년에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함.

11)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은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분과위원회의 분야나 위원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조례에 먼저 분야 및 위원수 등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합당하나,

서울시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분과위원회의 분야와 위원수를 임의로 정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안 제8조)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와 전문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66조¹²⁾

12) 제66조(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특별법 시행령의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며(안 제8조제1항), 이에 따라 지원단의 사무, 지원단의 구성·임명, 파견 요청 및 전문기관 지정 등 법령상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 즉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안 제8조제2항), 이는 종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항¹³⁾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균형발전 전문요원 운영 관련 내용이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반영된 것임.
- 참고로 전문인력은 서울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역균형발전 분야 수립 및 대내외 교류협력, 관련 연구용역 및 연구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¹⁴⁾, 2023년 전문요원 2명 보수 예산으로 1억 2천 4백만원(국비: 62,000천원, 시비: 62,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5) 그 밖의 사항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의견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작성,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함.
- 한편, 동 조례안과 함께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3)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 현재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계획팀 소속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분으로 2명 근무 중임.

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1405)은 동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연동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의 조례상 근거를 보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구성·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점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사업 목록 >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	85개 세부사업
I. 주 이 성 자 높 실 질 치 분 권	1-1. 자율적 자 치기반 마련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사무 적극 발굴
		자치조직권 자율화 및 책임성 강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1-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
		공유재산 활용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1-3. 지방의 자 치역량 제고	자치구와 상생하는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등 공무원 역량강화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방안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강화 방안
	1-4.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 개발	시민제안 발굴 및 정책반영 활성화
		시민의 실질적인 예산과정 참여활성화
	1-5. 지방의 책 임성 확보	진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정부 감사제도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의원 윤리의식 제고 방안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II. 인 재 를 키 우 는 과 감 한 교육개혁	2-1. 지역 어디 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서울런
		삶의 전환기 직업역량 강화 및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
		장노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수용역량 강화
	2-2. 대학과 지역 의 동반성장 지원	서울의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서울대 인근 서남권 창업허브 조성 추진
III.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3-1. 권역별 혁 신 성장거점 성으로 성장 력 확충 동	상암·수색 일대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서울혁신파크 복합개발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조성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혁신거점 조성
		경인로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거점개발
		옛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입체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왕십리 역세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
		상봉·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삼표부지 성수일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서울 글로벌 마이스 허브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용산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패션제조혁신 클러스터
		동대문 : 뷰티산업 클러스터
		DDP를 디자인문화와 디자인산업 중심으로 육성
	3-2. 지역별 과 학기술 진흥 및 디지털 역량강	상암 : 디지털미디어 산업고도화 및 M&E
		마곡 : 혁신적 R&D 클러스터조성

	화	공릉 : IT·바이오·나노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홍릉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강동 : ICT첨단산업단지조성 및 경제거점 육성 양재 : 신성장산업의 기반, 서울 AI 플랫폼 조성 수서 : 글로벌 로봇산업클러스터 청년 취업사관학교(디지털 인재양성) 조성 및 운영
IV.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4-1.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조선시대 최고관부 의정부지 정비를 통한 역사성 회복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품격있는 역사문화와 전통, 첨단 글로벌 트렌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도시
		K-팝, 한류 드라마, E스포츠 등 소프트파워 강화
		K-뷰티·K-푸드·콘텐츠 역량 강화 및 관광자원화
		서울항 조성 및 서해벚길 복원
		아라뱃길 연결 한강수상관광루트
		한강~서해안 갯벌 및 서해 섬 연계 해양관광레저 루트 개발
	4-2. 지역 발전 에 기여하는 교 통 인프라 구축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자율주행 교통물류 스마트 라이프 완성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서남권 일대)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경부선·경원선·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간선도로 지하화(동부간선도로)
		간선도로 지하화(경부간선)
		간선도로 지하화(강변북로 재구조화)
V. 기만맞정경 을느춤주 조성	5-1. 저출생(인 구감소)·고령화 대응 지원	지역균형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지역균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5-2. 실질적 균 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확충, 통합 신속 인허가 처리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운영 합리화,기부채납운영기준 제정으로 투명성 제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역세권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모아주택, 모아타운)
		저층주거지 및 노후 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문화 확대
		공공도서관 활성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5-3.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의 료·보건 확충
	5-4. 지역 환경· 생태자원의 보 전 및 활용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서울 초록길 구축 프로젝트
		용산공원 반환부지 개방
新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공원 3.0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04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10)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해당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위원회 신설검토서 제출)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08. 17. ~ 09. 06.)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양현정(☎2133-6731)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으로 매해 1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31)

위원회 신설검토서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설치목적	서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사항을 심의
설치 필요성	특별법 시행('23.7.10.)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심의·자문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위원회 성격	자문(), 심의(○), 의결()
설치요건 부합 여부	○ 부합 - 위원회 심의사항이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존 위원회와 중복·유사 여부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유□, 무■)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유□, 무■)
상설위원회 설치요건	○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위원임기(2년) 규정(특별법 제65조 제4항)이 명시되어 있어 상설 운영 필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	■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위원의 구성 및 임기(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 □ 존속기한(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파·회피 ■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 적정 ○ 상설위원회 설치 요건 부합 여부 : 적정 ○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적정 ○ 필수규정 명시여부 : 적정